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방한 시민사회 통합 사전보고서 (국문)

2026. 9. 11.

유엔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 방한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군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메아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무지개행동, 사단법인 온옴,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서울동행동료지원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사단법인
경기우리도,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아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한국동료지원인협회,
한국정신장애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홈리스행동, 희망법마중 (총 34개 단체)

서문

대한민국의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대한민국 국가방문(country visit)을 위해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국가방문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자의적 구금의 주요 의제와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체포·구속뿐 아니라 소년사법, 출입국·난민 절차, 북한이탈주민, 정신의료, 장애인·아동·노인·홀리스 시설, 여성구금, 군 구금시설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 감염병 대응, 과거사 피해자 등 구금 전반을 포괄합니다.

제출단체들은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 및 옹호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의 실태와 제도적 문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는 국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옹호활동에 중요한 기준과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실무그룹이 대한민국 방문 및 후속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본 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하고, 한국의 자의적 구금을 예방·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권고를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일반사항

국제기준의 비준

대한민국은 9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이주노동자협약을 제외한 모든 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다. 선택의정서의 경우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서를 가입하지 않았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예방기구도 설치되어있지 않다. 이주노동자, 아동, 자유를 박탈한 사람 등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과 선택의정서를 모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

- 이주노동자협약과 고문방지선택의정서 등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과 선택의정서를 신속히 가입할 것

국제기준의 국내법적 효력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이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 실질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결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효력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워킹그룹의 준거 기준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자유를 박탈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국제기준들도 재판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

-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비롯하여 자의적 구금과 관련된 국제기준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자의적 구금의 정의와 범죄화

대한민국에서 자의적 구금을 정의한 법률은 없으며,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실종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형사책임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형법 제124조는 불법체포,¹ 불법감금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276조²는 일반 체포감금죄를 규정하고 있다. 자의적 구금과 그 구금과정 또는 그 구금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의적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실종의 요소를 형사법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절차 이외에서 발생하는 구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구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보호’,³ ‘치료’⁴ 등의 용어를 사용한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권고

-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기준에서 정의하는 자의적 구금,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및 강제실종의 구성요소가 국내 형벌 및 형사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
- ‘보호’, ‘치료’ 등 그 명칭이나 법적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유박탈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구금으로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자유박탈에 대하여 자의적 구금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절차적 보장이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할 것.

영장없는 체포와 면책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따라 체포와 구속 시 영장주의를 규정⁵하고 있으며,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규정을 두고 있다.⁶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는 특히 시위현장, 파업현장 등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파업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경미한 범죄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¹ 형법 제124조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²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³ 「소년법」 제1조.

⁴ 「치료감호법」 제1조.

⁵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⁶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1조, 제212조.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 비판점으로 지적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1조의5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도입에 논란이 있었다.

권고

- 영장 없는 체포의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며,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형사책임 감면제도가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지만 영장없이 체포된 사람에게 기소 전 국선변호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기소 전 수사절차에서 법률구조가 공백인 것이다. 한편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국회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다. 체포적부심사에 있어 국선변호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지만, 당사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권고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자유박탈의 전 과정에서 예외 없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할 것

자의적 구금 피해자의 구제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자의적 구금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 및 배상 절차는 국내 법체계에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많은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이 구제절차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구제와 배상의 의미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⁷ 또한 「인신보호법」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제외하고 있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⁸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발생한 자의적 구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와 관련하여 공적 사과의 부재,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의 부재, 개별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권고

- 과거 및 현재의 자의적 구금 피해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 자의적 구금 피해자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완전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
-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국내 법·제도 및 관행에 충실히 이행할 것.

⁷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⁸ 인신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

과밀수용

과밀수용을 인권침해로 보고 국가의 수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⁹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구금이자, 취약 수용자들에 대한 차별적 구금으로서 카테고리 I, V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완화됐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5년에는 127.7%를 기록하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26년 6월 기준 수용현원은 63,048명으로 수용률 124.6%를 기록했다.¹⁰ 개별 교도소 마다 설정한 정원에 기초가 되는 1인당 수용면적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수용률의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2026년 6월 기준 대한민국 유일 여성교도소인 청주교도소는 수용 비율이 138.8%에 달했으며,¹¹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률은 2024년 말 125.8%에서 2025년 말 127.5%까지 높아졌고 2026년 현재도 119.6%로 정원을 웃돌고 있다.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성인수형자도 수용되어 있다.¹² 정부는 뚜렷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은 수용자의 가석방신청권을 부정하고 있어, 가석방은 수용자의 권리나 교정시설의 의무가 아닌 정부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다.¹³

권고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1인당 거실 면적을 법에 명시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밀수용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할 것
- 가석방을 확대하고 가석방신청권을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할 것

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¹⁰ 김민이·조하영,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6-11호(통권 제49호), 2026. 9. 9., 1면.

¹¹ 김민이·조하영,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2면.

¹² 뉴스핌, "[촉법소년이 놓친 것]② 소년교도소 과밀에 성인범도 수용..."소년사법 인프라 확충해야"", 2026. 8. 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2000449>.

¹³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1항, 제122조 제2항.

- 여성에게 적합한 수용환경을 구비한 교도소를 증설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
-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완전한 분리수용을 보장하며, 소년의 구금은 최후수단·최단기간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소화 할 것

폭염수용

교정시설의 물질적 조건과 관련하여 적정온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에 적정한 공간과 통풍 및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온도의 구체적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¹⁴ 적정온도가 보장되지 않는 구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처우로서 카테고리 I, III, IV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2016년 8월에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두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¹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¹⁶ 법무부는 2026년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장애인·환자 등이 수감된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 등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언론과 혐오로 발생하는 논란으로 인해 추가 설치사업을 중단했다.¹⁷

권고

- 적정온도, 온수공급, 목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것

독방감금

¹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¹⁵ 부산일보, "부산 재소자 2명 사망 원인은 '열사병'", 2016. 11. 10.,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1110000347>.

¹⁶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19방문0000100 결정에 대한 법무부 의견 및 이행계획 통지, 2020. 7. 3.

¹⁷ 서울신문, "'에어컨 설치 중단' 수용자에 얼음물 지급...37도까지 치솟은 교도소 상황", 2026. 8. 7.,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8/07/20260807500068>.

「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는 금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 조 제2항은 징벌가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2까지 가중하여 45일까지 징벌로서의 독방감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부과도 가능하다.¹⁸ 15일을 넘는 독방구금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구금으로서¹⁹ 카테고리1, 3, 4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중에는 102일간 징벌로서 독방구금된 2021년 진정사건,²⁰ 114일간 징벌로서 독방구금된 2023년 진정사건²¹ 등이 확인된다. 실제 수용자들의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속으로 금치가 이뤄지기도 하였다.

권고

- 징벌로서의 독방 감금의 최대기한이 15일을 넘지 않도록 형집행법령을 개정하라.

보호장비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보호장비의 경우 사용시간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호장비의 사용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²²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원에서도 수갑,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포승에 더해,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²³ 보호장비를 통한 인신구속은 카테고리1, 3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권고

¹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4호, 제109조 제2항.

¹⁹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A/RES/70/175, Rule 43(1)(b), Rule 44.

²⁰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의 부당한 연속 금치 징벌」, 21진정0108800.

²¹ 국가인권위원회, 「구치소의 부당한 연속징벌」, 22진정0652400.

²²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98조, 제99조.

²³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보호장비의 사용 시간과 보충성의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의료적 처우

교정시설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은 2020년 343명, 2021년 365명, 2022년 386명, 2023년 409명, 2024년 411명으로 300~400명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400명 안팎의 의료인력이 연간 700만~900만 건의 진료를 담당하는 셈이어서 의료인력 한 명당 연간 2만~3만 건, 어림잡아 하루 100건씩의 진료를 보는 셈이다.²⁴ 참고로 실제 진료를 보는 의사는 의료인력 중 의무와 공중보건의사로, 2025년 의무는 92명, 공중보건의사는 81명으로 총 173명이었다. 수용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의 구금은 카테고리1, 카테고리5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 교정시설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진료를 확대할 것

미결수용

미결수용자는 별도의 법률이 아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서신·진정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확연하게 일반 수용자와 구분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5년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인데, 이 중 미결수용자는 2만 1648명으로 전체의 34.0%를 차지했다²⁵. 이러한

²⁴ 문화일보, "교정시설 의사 턱없이 부족... '1인당 하루 100건 진료' 수준", 2026. 2. 11., <https://www.munhwa.com/article/11567792>.

²⁵ 법무부, 「2026 교정통계연보」, <https://www.moj.go.kr/bbs/moj/160/608664/artclView.do>.

미결구금에 대해 보석이 이뤄지는 비율은 30.5%에 불과하다²⁶. 미결수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권고

- 미결구금이 예외적인 조치로서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례적으로, 가능한 한 최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 유엔 비구금적 수단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도쿄규칙)에 따라 보석을 비롯한 미결구금의 대안적 조치를 확대할 것.
- 무죄추정의 원칙과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부합하도록,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벨슨 만델라 규칙)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처우를 보장할 것.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 현황 및 예방조치

정부는 통계자료로 사망 수용자 및 자살 수용자의 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연령, 성별, 유형,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수용자 사망 통계의 허점은 이른바 형집행정지제도에 있다. 위중증 수용자가 형집행정지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사망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는 형집행정지되는 수용자의 수도 통계자료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²⁷ 건강상황으로 조기석방되었어야 할 위중증 수용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금으로 카테고리I,V에 해당한다.

권고

²⁶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gubun=719>.

²⁷ 이데일리, "'죽어야 교도소 나오나'...논란의 '형집행정지' 개선방안은?", 2022. 10. 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6086632489968&mediaCodeNo=257>

- 수용자가 사망한 후 실시되는 내부 조사의 결과보고서와 부검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할 것

기소 전 자의적 구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 인권옹호활동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또는 수사과정에서의 감금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체포와 감금 등은 법적근거가 없거나 권리 행사에 대한 구금으로 카테고리1, 2, 3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시민들, 인권옹호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우회해서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다:

- 경찰이 해직교사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연행한 사례²⁸;
- 법원이 주거가 분명한 해고노동자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²⁹;
-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장애인 활동가를 체포한 사례;
- 경찰이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가 고공농성 중 연행한 사례³⁰;
- 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장애인 활동가 3명이 농성을 마치고 내려오자 바로 체포한 사례³¹
-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건설 노동자 2명이 농성을 마치고 내려오자 체포한 사례³²

²⁸ 매일노동뉴스, "'지혜복 복직' 외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 2026. 4. 1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76>.

²⁹ 경향신문, "[단독]고진수 지부장 '투쟁 중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라니, 너무 모욕적'", 2026. 5. 2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61644001>.

³⁰ 매일노동뉴스,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고공농성 중 체포", 2026. 4. 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38>.

³¹ 한겨레, "성당 종탑서 14일 농성 마치고 내려오자 장애인단체 활동가 3명 연행", 2025. 5.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606.html.

³² 경향신문, "건설 노동자 2명, 여의도 30m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 돌입", 2024. 10. 2.,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21017001>.

- 자진출석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한 사례³³
- 특히 집회를 기록하는 저널리스트를 주거침입, 업무방해를 이유로 체포, 구금하기도 한다.
- 폭력집회를 촬영하고 있던 저널리스트를 체포하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사례³⁴
- 그 외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체포, 조사실 감금 등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있다:
-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소환요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사례;³⁵
-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치장이 아닌 조사실에 장시간 감금한 사례;³⁶

권고

-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평화적 집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주거침입,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통한 구금 및 처벌을 중단할 것
- 집회 현장에서 공적 관심사를 기록하는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주거침입죄 적용을 통한 구금 및 처벌을 중단할 것
-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들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킬 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노동자, 인권옹호자들의 자의적 구금을 피할 것
-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할 것

³³ YTN, "자진 출석 피의자 긴급체포한 경찰..."서류 조작까지", 2026. 7. 14.,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42057583434.

³⁴ 한겨레, "서부지법 난동 촬영했다고 '유죄'...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청구", 2026. 5. 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0788.html.

³⁵ 뉴스1, "제주경찰, 진보인사 3명 체포...시민단체 "정부의 공안탄압"", 2024. 10. 28., <https://www.news1.kr/local/jeju/5581733>.

³⁶ 자주시보, "국가보안법 휘두르며 불법 감금한 경찰 고소...권말선 대책위", 2026. 1. 5., <https://www.jajusibo.com/69352>.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권위주의정부 시기에 특별입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은 형기가 종료된 수형자들을 별도의 수용시설에 격리하는 제도였다.³⁷ 이중처벌과 장기구금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사회보호법은 2005. 8. 4.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폐지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이전에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었고, 당시 보호감호가 집행 중이거나 집행예정된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수용되도록 하였다.³⁸ 보호감호처분은 형기 종료 이후의 구금이자 특정 수형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구금으로 카테고리1과 카테고리 5에 해당한다.

현재 피보호감호자의 통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4명의 피보호감호자가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었으며, 25명의 수형자가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³⁹ 피보호감호자들은 장기구금된 수용자로 사회복귀와 재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⁴⁰ 보호감호는 상습 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구금을 연장하는 자의적 구금이었고, 법률이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권고

-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구금을 즉각 중단할 것
- 사회보호법폐지법을 부칙을 폐지하고, 보호감호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
-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공적 사과 등을 포함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

³⁷ 더시사법률, "[기획] 사회보호법 폐지됐지만...보호감호 대상자 교정시설에 3명 집행 중", 2025. 9. 24., <https://tsislaw.com/mobile/article.html?no=25797>.

³⁸ 「사회보호법폐지법률」(법률 제7656호, 2005. 8. 4. 폐지, 시행 2005. 8. 4.).

³⁹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2방문0000200, 5, 11면.

⁴⁰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2방문0000200, 19, 20면.

국가긴급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3항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¹ 계엄법 제9조 제1항도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⁴²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집회 및 언론활동 등의 전면 금지와 더불어 영장없는 체포를 허용했다.⁴³

비상계엄을 통해 영장없는 체포, 구금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군사법원이 이를 관할하게 하는 것은 유예될 수 없는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 등 자유권규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적법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제도와 권리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비상계엄제도는 카테고리I, II, III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권고

- 국가긴급권 행사 시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 등 자의적 구금을 허용하고 있는 계엄법과 헌법을 개정할 것.
- 국가긴급권 행사 시에도 일반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거 보장되도록 헌법과 계엄법을 개정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 카테고리 II, V

⁴¹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

⁴²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⁴³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024. 12. 3.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⁴⁴ 이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은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의 생활관에서 예외 없이 합숙해야 하고, 이탈 시 이탈일수의 5배가 복무기간에 가산되고, 통산 8일 이상이면 편입이 취소되어 다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다.⁴⁵ 대체복무요원에게 부여되는 업무도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형자 신분으로 복역하며 담당했던 업무와 대부분 동일하다.⁴⁶ 한편 2026년 1월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병역거부자 5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42.8%는 교정시설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성소수자 대원에 대한 혐오 표현, 비건 신념에 따른 식사 미제공 등 소수자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욕과 차별적 처우가 보고되었으나 법령상 신고와 구제 절차가 미비하다.⁴⁸ 시설 편입 여부를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역시 병무청 산하에 설치되어 위원 13명 중 5명을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천하고,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⁴⁹ 30세를 초과한 사람, 입영이 개시된 사람 및 현역 군인은 애초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없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36개월의 복무기간과 교정시설로 한정된 복무분야가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고 지적했고, 실무그룹과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2025년 공동 서신을 보냈으나, 정부는 ‘복무 강도의 차이’를 들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⁵⁰

이상과 같이 대체복무제도는 자유권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행사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구금이자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하는 소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카테고리II, V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⁴⁴ 헌법재판소 2018. 6. 28. 자 2011헌바379 결정;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⁴⁵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⁴⁶ 형혁규(국회입법조사처),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 성격 해소를 위한 방안",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6. 1. 22., 76면.

⁴⁷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⁴⁸ 장길완, "대체복무요원 제도 인식 조사"(2026. 1. 14.-16. 조사, 응답자 56명),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6. 1. 22., 51-52, 55-67면; 오마이뉴스, "성소수자의 대체복무, '적응해보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 2024. 12. 2.,

https://www.ohmynews.com/NWS_View/at_pg.aspx?CNTN_CD=A0003083793.

⁴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양여옥,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6. 1. 22., 42~44면.

⁵⁰ CCPR/C/KOR/CO/5, paras. 51~52; A/HRC/62/24 para. 36.

2020-2025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대체역 편입 신청 3,786건 중 0.26%가 기각 또는 각하된 데 비해, 개인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신청은 28건에 불과했고 그중 28.6%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대체역 편입 신청은 2020년 1,962건에서 2025년 335건으로 83% 감소했고, 대체복무를 포기하거나 거부해 형사처벌 위험에 놓인 병역거부자가 2026년 1월 기준 11명이다.⁵¹ 대체복무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사람에게는 현역입영통지서가 재발부되어⁵² 재차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처벌되고 있다. 2014년 입영통지 이후 병역거부로 기소되어 2020년 무죄가 확정된 김혜민씨는 이후 현행 대체복무를 거부하여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2023년 5월 대체복무를 중도 취소한 강현범씨는 재차 입영통지를 받은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⁵³

개인적 및 정치적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대체복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구금과 형사처벌 이후 재구금은 카테고리 II, III, V에 해당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및 2023년 최종견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⁵⁴ 그러나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전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어떠한 구제수단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위한 별도의 입법 의무가 국회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⁵⁵ 국회에서 별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권고

⁵¹ 병무청 제출자료(2025. 12. 31. 기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6. 1. 22., 53, 74~75면.

⁵²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병역법」 제71조 제1항.

⁵³ 주간경향, "누군가의 양심은 여전히 유죄입니다", 2025. 6. 16.,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6160600061>.

⁵⁴ CCPR/C/KOR/CO/4, para. 45, CCPR/C/KOR/CO/5, paras. 51-52.

⁵⁵ 헌법재판소 2018. 7. 26.자 2011헌마306등 결정.

- 대체역법을 개정하여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1.5배(27개월) 이하로 단축하고, 복무분야를 소방, 사회복지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며, 전원 합숙 의무를 폐지하라.
-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군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구로 이관하고, 재심사 절차를 도입하며, 연령, 입영 개시, 현역 여부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을 폐지하라.
- 신병의 종류와 소수자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할 것.
- 이미 재판이나 심사를 통해 병역거부 의사를 확인받은 사람에 대한 반복적 입영통지 및 기소를 금지하고, 2018년 이전 형사처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와 금전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

병역심사관리대 강제 입소 대기 – 카테고리 I, V

현행 대한민국 「부대관리훈령」은 군단급 이상 제대에 병역심사관리대를 설치하여 자살우려나 신체·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병사 중 추가 관찰이 필요한 인원을 입소시켜 진료·관찰을 실시한 후 전역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⁶ 병역 관계 법령은 병사를 특정 시설에 격리·수용하여 병역심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⁵⁷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역심사관리대로의 입소는 사실상 강제적 구금이다. 시설 밖으로의 자유로운 이탈이 허용되지 않고, 독방 생활이나 통신 제한 등 추가적인 자유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는 통상적인 군 복무상 관리를 넘어선다.

⁵⁶ 「부대관리훈령」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병역심사관리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⁵⁷ 「병역법」 제65조 제1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이러한 병역심사관리대 입소·수용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구금이자 신체·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에 기인한 구금으로 카테고리 I, V의 자의적 구금이다.

군인권센터가 지원한 한 병사의 사례에서 병역심사관리대 제도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해당 병사는 자대배치 후 우울 증상을 보였고, 부모가 휴가를 요청했음에도 2023년 11월 3일 병역심사관리대로 보내져 구금되었다. 가족들은 그 병사가 병역심사관리대에서 약 2주간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생활하면서 정신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다. 그 병사는 병역심사관리대에서 나온 후 심각한 자해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장기간 입원했다.⁵⁸

권고

- 병역심사관리대 강제 입소 제도를 재검토하고,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역심사는 의무기록·복무기록 검토 및 면담 등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것.
- 자유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요건, 목적, 절차, 종료시점 및 최대 수용기간, 독립적인 구제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할 것.
- 자유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의 소통 및 통신을 보장할 것.

⁵⁸ 세계일보, "'내가 내 아들을 못 지켜'... 멀쩡하던 아들 '군입대' 후 우울증, 부모 인권위 진정", 2024. 2. 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1351117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 카테고리 I ~ V

1. 관련 법제도

- 1) 한국은 보호를 신청해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비밀구금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 장기간 구금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 등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채 간첩수사 등을 진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 등에 보내질 경우 이의신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 모든 절차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⁵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은 ‘구금’이 ‘형사수사’가 아닌 ‘보호’와 ‘행정조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2) 이러한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은 자의적구금워킹그룹의 자의적 구금 5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문제되는 현실

- 1) 자유권위원회의 2015년 및 2023년 최종견해와 고문방지위원회의 2017년 및 2024년 최종견해는 한국에 대하여 1)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능한 최소한 기간의 구금 보장, 2) 심문 시를 포함 구금된 전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권 보장, 3) 정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결정하는 조사절차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절차 구별 등을 권고했다.⁶⁰
- 2) 하지만 권고를 수용되지 못했고 상황인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조사기간의 상한은 있지만 보호에 관한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국정원이 여전히 조사와 구금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변호인접견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보호결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관련당국과 절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행 관행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는 접근으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준하는 인권 침해와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⁵⁹ <https://shorturl.at/H5pk2>

⁶⁰ CCPR/C/KOR/CO/4, CCPR/C/KOR/CO/5, CAT/C/KOR/CO/3-5, CAT/C/KOR/CO/6

3. 권고

- 한국은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입국과 동시에 장기 구금 및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원 주도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폐지하고 난민인정절차에 준하는 비강압적 절차를 도입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
- 한국은 즉각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호인접견권을 보장하고, 보호불허 또는 강제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라.

국가보안법

유엔 조약기구의 지속적인 권고⁶¹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찬양, 고무, 소지, 취득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⁶²은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 등 규약상 권리 행사에 대한 처벌이자, 특정 의견과 사상을 가진 사람을 체포, 구금하는 법률로 카테고리1, 5에 해당한다.

2025년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는 10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건 접수와 수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⁶³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⁶⁴ 이러한 피해자들은 진실과화해위원회의

⁶¹ A/HRC/54/24/Add.1, paras. 70, 86(t).

⁶²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⁶³ 2025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기소인원은 105명으로 2024년 88명보다 증가했으며, 2025년 사건 접수인원은 총 171명에 달했다.

법무부·대검찰청, "국가보안법위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⁶⁴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404호, 2026. 6. 22.), 2면,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404/detailRP>.

; 또는

이재승, "찬양고무죄의 재심", 『민주법학』 제78호, 2022, 57~59면,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19890.

조사도 받을 수 없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피해자들의 배상과 재발방지 등 효과적 구제의 권리의 관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구제절차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고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게 구제절차, 공적 사과, 명예회복, 금전보상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라
- 확정판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라.

⁶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항.

외국인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의 영사통보 및 접견권- 카테고리 III

대한민국이 가입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권리,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권리(영사통보 및 접견권)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형사 절차상 영사통보 등의 의무는 경찰수사규칙과 「영사기관 통보 등 업무처리 지침」 등 하위규칙에만 규정되어 있고, 실무상 체포·구금 과정에서 해당 권리가 실제로 고지되고 행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통계와 독립적인 감독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 외에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2년 대법원은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 및 구속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 영사통보 및 접견권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⁶⁶ 영사통보 및 접견권의 침해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로서 자의적 구금 제3유형(Category III)에 해당한다.

권고

- 외국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즉시 영사통보 및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고, 해당 권리를 당사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지체없이 고지할 것
- 영사통보 및 접견권의 이행 여부를 기록·감독하고, 권리 침해 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보장할 것

⁶⁶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민 구금의 문제 - 카테고리 4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을 위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⁶⁷는 해당 법이 구금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이 독립적·중립적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개정법이 2025년 6월 시행되어 구금기간에 일정한 상한(9개월)이 도입되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구금의 연장 및 적법성을 심사하는 이 위원회는 법무부 내부에 설치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심지어 개정법에 따르면 난민신청 또는 난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어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실상 장기구금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제도 상 비구금적 대안은 고려되지 않고,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즉시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난민신청자, 무국적자 등 송환이 불가능한 사람도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며, 난민신청이 오히려 구금기간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보호(구금)해제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지위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권이 보장되지 않아 다시 구금될 위험에 놓인다.

구금에 대한 독립적 통제도 부족하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이고 그 사무를 출입국 공무원이 담당하여, 법무부가 자신의 구금 처분의 적법성을 스스로 심사하는 구조이다. 단속 및 구금 대상 선정기준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통·번역과 법률조력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한된다.⁶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98.6%)이 일률적으로 법정 최대치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되는 등,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⁶⁹

⁶⁷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⁶⁸ 이에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최대 20개월까지 허용하고,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의 독립적·효과적 심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우려를 표하며, 난민에 20개월 장기구금 조항의 폐지와 독립적인 사법심사 도입을 권고하였다. CERD/C/KOR/CO/20-22 para 27-28

⁶⁹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2025년 8월 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 즉 98.6%가 법정 최대치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구금시설 내 처우 또한 심각하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장기구금 중이던 난민신청자가 진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독방에 격리되고 손발이 뒤로 결박되는 이른바 ‘새우깍기’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가 확대되었고, 독방 격리 및 보호장비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비공개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의 독립적 통제가 어렵다.

권고

- 이주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송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질적인 비구금적 대안을 마련할 것
- 구금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 등 독립된 기관이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심사할 것
- 난민신청자·무국적자 등 송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주민의 장기구금을 제한하고, 외국인보호소 내 강제력 사용과 생활조건에 대한 독립적 감독을 강화할 것

여성 이주구금자에 대한 재생산건강권 침해 – 카테고리 V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된 여성을 위한 성별 맞춤 의료·위생 지원 기준을 정한 조항이 없으며, 하위법령인 「외국인보호규칙」도 임신부·노약자에게 본인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규정만 둘 뿐, 여성 의료진 배치나 생리용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최소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다.⁷⁰ 이러한 처우는 UN여성피구금자처우규칙(방콕규칙) 제5조(위생용품의 무상 제공)·제10조(여성이 원할 경우 여성 의료진에게 진료받을 권리)⁷¹와, 임신부·수유부 등 취약계층의 원칙적

⁷⁰「외국인보호규칙」 제20조(건강진단) 제2항.

⁷¹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Rules 5, 10 (2010);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준 정보포털,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1115>

구금 배제와 실효적인 진정 및 구제수단을 요구하는 UN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개정 심의 제5호⁷²에 어긋난다.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여성은 전체 피구금자의 약 30%를 차지하나, 2023~2024년 산부인과 진료 건수는 전체 진료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⁷³ 생식건강 문제로 진료를 요청한 한 피구금자는 고령의 남성 의사로부터 “별것도 아닌 것으로 왔다”는 식의 무시하는 응대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건이 보도되었다.⁷⁴ 위생용품 역시 체형·생리량과 무관하게 단일 규격만 지급되며, 부족분은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⁷⁵

체류단속·의료거부·강제출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산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4년 6월 임신 4주차의 이주노동자가 체류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입었다. 법무부 협력병원을 포함한 두 곳의 종합병원은 임신부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였고, 119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⁷⁶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금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여성은 강제출국되었으며, 이후 태국에서 유산 진단을 받았다.

권고

- 임신부·수유부는 원칙적으로 구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금 중 임신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할 것.
- 여성 보호외국인의 정기검진에 부인과 검진을 기본 항목으로 포함하고, 여성 의료진 배치 및 위생용품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의료 접근 현황을 정기적으로

⁷²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Revised Deliberation No. 5 on the Deprivation of Liberty of Migrants, annexed to A/HRC/39/45 (7 February 2018), <https://docs.un.org/en/A/HRC/39/45>

⁷³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2024년 마중 활동보고서』;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 진료 현황, 2023~2024년」(2025), 26쪽.

⁷⁴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2025년 마중 활동보고서』(2026), 59쪽.

⁷⁵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2025년 마중 활동보고서』;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 「전국 전문외국인보호시설 운영 현황」(2026), 29쪽.

⁷⁶지원단체는 일시보호해제를 통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보호소에는 이에 대해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일시보호해제는 거부되었다.

공개하여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⁷⁷

아동의 이주구금 - 카테고리 I, IV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 제56조의3의 “19세 미만인 사람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 뿐이다. 특히 정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직접 보호명령 처분을 발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을 ‘구금된 아동’이 아닌 부모 동반 아동⁷⁸으로 표현하며,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모에게 강제퇴거 명령이 발령될 때 자녀에 대해 별도의 대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14세 미만 아동이 함께 강제로 구금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모든 상태는 구금에 해당하며, 공식적인 행정 처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명백한 구금이다. 따라서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아동이 강제로 수용되는 행위는 법적 근거를 우회한 카테고리I 및 카테고리IV(이주민, 난민 구금)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통계에 따르면 구금 대상이 아닌 영유아 및 아동이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세 미만 아동의 외국인보호시설 구금 건수는 2020년 16명, 2021년 12명, 2022년 13명에 달했다. 14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9년 28명, 2020년 25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 2023년 23명, 2024년 8월 기준 7명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구금되었다.^{79 80}

⁷⁷이주연, 「국내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 국내 현황과 국제 비교」, 『비판사회정책』 제92호(2026), 95-125. <https://doi.org/10.47042/ACSW.2026.08.92.95>

⁷⁸ 외국인 보호규칙」(법무부 훈령) 제4조제2항: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⁷⁹ 전현희 의원실, 법무부 제공자료, “이주아동 구금 현황 (2019년~2024년 8월).”

⁸⁰ 정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제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주장하나, 정작 부모 동반 아동은 제외되어, ‘부모 동반’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구금을 계속 용인할 보완책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형사 미성년 기준인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외국인 보호규칙」 제4조 제4항은 1개월 이상 구금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호시설에서 위탁교육이 실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그룹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이주를 이유로 한 아동 구금을 ‘최후의 수단’이 아닌 ‘원칙적 금지’ 대상으로 보는 만큼, 대안적 보호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이주아동 구금 제도는 자의적이다.

권고

- 부모 동반을 포함하여, 이주를 사유로 한 아동의 행정 구금을 즉각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입국항에서의 이주구금 – 카테고리 I, IV

출입국항에서 매년 수백 명의 난민신청자들이 구금되지만 이들을 구금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의 접수 여부를 판단하는 회부심사를 받게 되는데⁸¹, 불회부결정을 받으면 난민신청 접수거부와 함께 송환대상이 된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어야만 입국할 수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는 결국 승소할 때까지 공항에 구금된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불회부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면 평균적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인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지만, 1심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출입국항 최장 구금기간은 423일이다.⁸²

당국은 외국인은 언제든지 비행기 표를 구매하여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국에서의 박해 위협을 느끼는 난민신청자들로서는 공항 체류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카테고리 I 및 카테고리 IV(이주민, 난민 구금)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된 외국인은 한국에 남고자 선택한다면 무조건 구금되기에 구금 취약계층(아동, 임산부, 노인 등)도 예외 없이 구금된다. 실제로 출입국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난민신청자는 12명이었다.⁸³ 그 중에서 말리에서 온 만 10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하여 1년 넘게 갇혀있다가 결국 본국에 송환된 사례가 있었다.⁸⁴

⁸¹ Article 6 (Application Filed at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Refugee Act

⁸² Kyunghyang Shinmun, 「423 days living in an airport transit area...Do you know the ‘Incheon Airport refugees’?」, <https://www.khan.co.kr/en/article/202604100906017>

⁸³ 법무부 정보공개청구결정서(15937761), 2025년 출입국항 구금 현황

⁸⁴ The Korea Times, 「Rights watchdog calls for ensuring education rights for 10-year-old asylum seeker in limbo at airport」,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20260811/rights-watchdog-calls-for-ensuring-education-rights-for-10->

권고

- 공항 외 별도의 생활시설을 마련하여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공항 장기구금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아동사법

1. ‘아동 보호’를 이유로 한 자의적 시설 구금 - 카테고리 I, III

대한민국은 아동의 시설보호가 손쉽게 결정된다. 시설 배치 및 장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정기적 검토가 부재하며, 시설보호의 최후수단성 원칙이 이행되지 않은 채 시설 보호기간이 평균 12년⁸⁵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시설배치와 자유제한 처우에 관하여 아동의 참여권 및 독립적 심사·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시설보호는 카테고리 I, III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국가 차원의 아동 탈시설 로드맵은 부재하다. 2025년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48%(703명:1,466명)가 시설에 배치되고, 일시보호 조치를 받은 아동 중 시설 배치는 93.3%(475명:509명)에 달하며,⁸⁶ 2024년 12월 기준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된 아동 중 69.3%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다.⁸⁷ 2022년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년 2명이 잇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⁸⁸ 2025년 8월에는 16세 아동이 시설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추락사⁸⁹한 사실은 아동에 대한 자의적 시설 구금을 중단해야 할 이유이다.

2025년 전국 아동양육시설 197곳의 생활규칙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광범위한 외출·통신 제한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규칙을 위반할 경우 「소년법」상 ‘우범소년’ 통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⁰ 이는 자유박탈 아동에게 통신·면회권을 보장하고 이를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하바나 규칙(A/RES/45/113)에 반한다.

⁸⁵ 이상정 외. (2020).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⁸⁶ 보건복지부. (2026).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⁸⁷ 보건복지부. (2025). 2025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4. 12. 31. 현재).

⁸⁸ 시사인. (2022. 9. 29.자).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두 청년의 죽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88>

⁸⁹ 경향신문. (2025. 8. 26.자). ““벌칙 때문에 힘들어” 아동양육시설 생활 10대 유서 남기고 추락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61004001>

⁹⁰ 시사인. (2025. 11. 10.자). “[단독] 금지, 압수, 배상, 박탈… 전국 아동양육시설 197곳 생활규칙 분석”.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58>

한편 시설에서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신병원에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키거나,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처방약을 오·남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⁹¹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대책 마련은 부재하다.⁹² 허가 없이 쌍꺼풀 수술을 받거나 가출 또는 흡연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을 최장 6개월간 정신병원에 비자의적으로 입원시키는 결정이 사실상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⁹³ 시설장이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겸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상 아동의 변호인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시설장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사례⁹⁴도 보고된다. 시설보호아동의 ADHD 약물 복용률은 2021년 1,229명(12.8%)에서 2025년 2,076명(25.7%)으로 4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⁹⁵ 2026년 4월 기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ADHD 등 정신과 처방 약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중단 이력 없이 처방이 계속 이어졌으며, 6년 이상 복용자의 중단 기록 또한 확인하기 어려웠다.^{96,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에 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함께 양육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 임신부는 매년 8명에서 20명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유아 17명이 양육자와 함께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⁹⁸ 실무상 아동의 주양육자에 대한 구금보다 비구금적 대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육자와 함께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⁹¹ 울산매일신문. (2025. 1. 19.). “‘말을 안들어서’...지역 양육원, ADHD 약물 남용 의혹”.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571>

⁹² 허락 없는 쌍꺼풀 수술, 가출, 흡연 등을 이유로 6개월간 강제입원시키는 결정이# 사실상 시설장의 재량에 좌우되고, 시설장이 법정대리인인 상황에서 변호인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도 어렵다. 시설장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사례도 보고된다.

⁹³ 노컷뉴스, 2018. 10. 4. 경찰, 정신병원 강제 입원·학대 의혹 보육원 원생 전수 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040252>.

⁹⁴ 문화일보, 2023. 3. 21. “아동복지시설 60대 원장, 미성년자 5명에 폭언·폭행 등 학대 혐의로 檢 송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2101039910226004>

⁹⁵ 한겨레. (2026. 7. 14.자). “양육시설 아동 넷 중 한명 ADHD 약물치료... 소규모화 필요한데 논의

‘챗바퀴’”.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68249.html

⁹⁶ 백혜련 의원실. (2026. 6.).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⁹⁷ 취학 전 아동의 경우 ADHD의 감별 진단 자체가 어렵고, 시설 입소 아동은 학대·가정해체 등 복합 외상 경험이 있어 외상 관련 반응과 ADHD 증상의 구별에 더 높은 수준의 평가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투약 동기가 치료가 아닌 행동 통제에 있었음이 추정되는 근거다.

⁹⁸ 법무부 교정본부. 2026 교정통계연보 p. 136.

권고(제안)

- 아동에 대한 자의적 시설 구금 예방을 포함한 구체적인 아동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아동에 대한 모든 시설 배치 결정에 대한 독립적·정기적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
- 약물 오·남용을 포함해 정신병원에 배치된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체계적인 전환과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
- 주양육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비구금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교도소에서 양육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소년보호시설 내 자의적 자유박탈 – 카테고리 II, III, V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비행 정도가 낮지만 가정의 부재 또는 취약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비행 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재범이고 가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하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행 정도가 높지만 엄격한 제도적 선도보다는 다소 온정적인 보호에 의한 선도를 기대할 수 있고 아직 9·10호의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이하, ‘대상소년’),⁹⁹ 대상소년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이하, ‘6호 처분 시설’)에 감호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⁰

‘대상소년’의 요건에서 알 수 있듯, 6호 처분 결정은 비행의 중대성보다 가정환경의 취약성, 보호자의 낮은 역량, 혹은 시설의 규율 위반 등 아동의 생활환경이나 보호자와의 관계, 범죄가 아닌 특정 태도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내용과 무관하게, 폭력성이 심한 소년은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6호 처분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안내도 있다.¹⁰¹ 이는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며, 사실상 학대 및 방임의 피해자인 아동을 그 피해의 결과(가출, 반항적 행동 등)를 이유로 구금하는 구조로서, 카테고리 II와 V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또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소년법 제33조 제7항). 그러나 이탈은 단순히 사실 인정으로만 평가되고, 시설 내 학대 피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는 부재하다. 6개월 이상 자유가 박탈되는 6호 처분의 연장·재위탁 단계의 국선보조인 선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소년법 제17조의2), 구금의 적법성을

⁹⁹ 법원행정처(2014). 법원 실무제요: 소년. 351쪽.

¹⁰⁰ 소년법에 따르면 판사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¹⁰¹ 위의 각주와 같음.

다들 권리가 형해화되는 문제도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카테고리 Ⅲ에도 해당한다.

권고

- 비행이 아닌 가정환경의 취약성·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자유박탈적 조치(6호)를 형사사법적 틀 내 구금 처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비구금적 대안(가정위탁, 지역사회 기반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과 지침을 마련할 것
- 6호 처분의 개시부터 연장·재위탁 결정에 대해서도 소년 본인 및 보조인의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의무화할 것
- 시설 처분 및 재위탁 시에 독립적 사법기관의 재심사를 의무화할 것
- 시설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모든 소년의 변호인 또는 독립적 인권기구에 대한 접근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할 것

3. 소년사법체계 내 자의적 자유박탈 - 카테고리 I, II, III, V

「소년법」은 실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동의 비행성향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하 ‘우범소년’)을 법원에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통고에 따라 아동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에 구금되고 있는데, 구금의 필요는 통고권자(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2019~2023년 전체 통고의 74.0%(1,661건:2,244건)가 우범소년이었고 통고의 37.1%가 학교장·시설장에 의한 것으로,¹⁰² 학교와 시설이 사법적 제재를 아동 통제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촉법소년¹⁰³ 흉포화 등을 이유로 「형법」상 14세인 형사책임능력의 상한 기준을 낮추려는 움직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도 있다. 그러나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법원 단계의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2015년 15.9%에서 2024년 28.4%로 크게 증가한 점¹⁰⁴은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사건들이 과도하게 재판에 회부되는 실태를 드러낸다. 이미 「소년법」은 10세 이상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에 구금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¹⁰⁵ 그럼에도 2026년 8월 대통령은 중대·반복범죄에 대해 형사책임능력 연령(14세)을 한 두살 낮추는 입법을 재차 주문했다.¹⁰⁶

게다가 범죄소년과 달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의 전건 송치 의무 규정¹⁰⁷으로 인해 사법 외 절차로 전환될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있다.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선정되어,¹⁰⁸ 수사·재판 단계 전반에서 변호인 조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결구금 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없고,¹⁰⁹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구인·유치 요건 역시

¹⁰² 법원행정처. (2024). 2024년 소년 통고 실무

¹⁰³ 「소년법」에 따라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의 죄를 범한 소년을 말하며,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제4조 제1항).

¹⁰⁴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¹⁰⁵ 「소년법」제4조, 제32조.

¹⁰⁶ 한겨레. (2026. 8. 25. 자).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속히 결론 냈으면 좋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74573.html>

¹⁰⁷ 「소년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

¹⁰⁸ 「소년법」제17조의2 제1항

¹⁰⁹ 「소년법」제18조

불명확하며 당사자 심문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카테고리 Ⅲ 유형의 자의적 구금이다.

2025년 기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연평균 수용률은 144%(남성소년 132%, 여성소년 191%), 전국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연평균 수용률은 114%(여성소년원 152%)에 달하는 실태도 문제다.¹¹⁰ 소년수형자를 위한 유일한 전담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약 110명)의 4배에 달하는 성인수형자(약 400~500명)가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며,¹¹¹ 구치소에는 성인과 아동이 혼거수용되고 있다.¹¹² 구금의 과밀률과 혼거수용은 구금환경을 악화시키고, 사법적 심사 및 방어권 행사도 저해한다.

또한 소년원 등에 수용된 경우, 면회·편지·전화통화와 같은 기본적 자유가 ‘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교육에 해가 된다’는 기관 종사자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고,¹¹³ 그 권리의 주장이 근신실 처우(독방 처우)¹¹⁴ 등 가중된 자유박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처우 문제는 카테고리 II, III, V의 자의적 구금이다.

권고

-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연령 하향 및 중대범죄 조건부 이중적 체계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¹¹⁵
- 우범소년 규정(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통고제도(제4조 제3항)를 폐지할 것
- 「소년법」에 자유박탈의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하며,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¹¹⁰ 법무부 보도자료. (2026. 4. 8.자).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

<https://www.moj.go.kr/bbs/moj/182/605273/artclView.do>

¹¹¹ 뉴스핌. (2026. 8. 16.자). “[촉법소년이 놓친 것]② 소년교도소 과밀에 성인범도 수용..."소년사법 인프라 확충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2000449>

¹¹²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¹¹³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부터 제39조의2까지.

¹¹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7호, 제18조 제1항 단서.

¹¹⁵ WGAD는 2024년 바하마 방문보고서에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지나치게 낮은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2025년 캐나다 방문 보고서에서 범죄의 경위나 중대성과 관계없이 아동에게 성인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사생활의 보장 등 아동의 구금 환경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 카테고리V, I

1.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 법제도

대한민국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여전히 장애에 기초한 비자의적 입원조항¹¹⁶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애와 결부된 자·타해 위험과 입원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자유 박탈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이는 ICCPR 제 9조, UN CRPD 제14조¹¹⁷ 등에 위반되는 **Category V**에 해당한다. 또한, 당사자가 자유박탈의 적법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은 **Category I**의 자의적 구금 문제를 동반한다.

2. 문제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절차조력제도를 통해 비자의적 입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모두 자유 박탈 이후 작동하는 사후적 장치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실제 2024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제 비율은 1.4%(443건), 서울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제 비율은 약 1% 수준에 머무른다¹¹⁸.

¹¹⁶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50조(응급입원)이 해당되며, 대한민국 정부가 자의적 입원이라고 바라보는 제42조(동의입원등)에서도 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비자의적 요소를 내포한다.

¹¹⁷ UN CRPD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인지된 위험성을 근거로 장애인의 자유 박탈을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CRPD/C/KOR/CO/2-3 para.32)

¹¹⁸ Biotimes. (2024. 12. 11.) What does the data reveal about the psychiatric hospitalization system? National Assembly Library publishes Data & Law.

<https://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91> ;

Office of Rep. Kim Ye-ji, People Power Party. (2024). Internal materials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ork report.

또한 최근 정신의료기관 폐업 및 병동폐쇄로 기존 입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퇴원 의사와 지역사회 전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지 않고 다른 정신병원으로 집단 전원하는 사례가 반복¹¹⁹되고 있다. 이는 자유박탈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금장소만 이전하면서 수용을 연속시키는 관행이다.

3. 권고

- 장애에 기초한 비자의적 입원 및 수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률을 완전히 폐지할 것
- 수용된 모든 사람의 자유박탈 상태를 독립적으로 재검토하고, 박탈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법률 및 절차조력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지원과 더불어 자유박탈을 종결할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 관련 법률, 정책의 수립, 시행 및 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과 그 대표단체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¹¹⁹ The Hankyoreh, Ko Kyoung-tae, "[Exclusive] Bangudae Hospital: 'plan to transfer 85.7% of patients' — concerns over 'recycling closed wards'" 28 Aug. 2026 (in Korean),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582>

Media Life, "When the psychiatric hospital closed, back to another psychiatric hospital", 2026 (in Korean),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86>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 — 장애를 이유로 한 자의적 자유박탈

대한민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은 자의적 구금 판단 5개 카테고리 중 최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 카테고리 **III**: 이의제기·사법구제·변호인 조력에 접근할 실질적 통로가 없다. 카테고리 **V**: **UN CRPD 제14조 및 19조·일반논평 제5호·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장애를 이유로 한 시설수용 자체를 협약 위반이자 손상에 근거한 자유박탈로 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입소를 본인·후견인의 '계약'으로 규정할 뿐, 독립적·사법적 심사나 정기 재심사·불복 절차가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로드맵>을 2021년 발표했으나, 로드맵 완료 시점에도 시설의 잔여를 설정하고 있어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¹²⁰. 또한, 시설장에 의한 여성 거주인 전원 대상 성폭력, 방임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한 거주인 사망사건 등 각종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시설 폐쇄가 매우 저조하다¹²¹

비자발적 입소는 구조적이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67.9%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했고, 30.1%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¹²². 보건복지부의 2025년 조사¹²³에 따르면 평균 입소기간 24.3년으로 사실상 종신 구금에 해당한다. 전화·금전사용 제한 외부와의 소통 단절은 인권침해를 은폐하는 조건이 된다¹²⁴. 예산 배분도 이를 재생산한다: 2026년 한국 정부 예산을

¹²⁰ CRPD/C/KOR/CO/2-3 para.42.(a)

¹²¹ The Korea Herald. (9 Feb. 2026). "Korea eyes shift to care in community, but funding still lacking, disability groups divided"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72734>

¹²²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2017)

¹²³ 보건복지부,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2025.11.27 발표, 50인 이상 107개소·7,070명 대상)

¹²⁴ 연합뉴스. (2025.11.27.) "시설거주 장애인 6% "전화·돈 못써"... "신체·성적 학대" 응답도"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7084400530>

보면, 거주시설 운영지원에는 7,364억 원이, 탈시설 자립지원에는 78억 원만이
배정되어있다. CRPD 일반논평 제5호는 시설수용이 '선택'일 수 없다고 명시하나¹²⁵,
정부는 탈시설 의사 확인을 조건화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박탈을 사실상
지속시키고 있다¹²⁶.

권고

-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모든 신규 입소 중단 및 기존 시설 투자 금지
- 시설 수용 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 절차 도입
- 탈시설 예산 대폭 확충과 탈시설 이행 로드맵·종료 시한의 법제화
-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국정조사 추진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 보상
법제화

¹²⁵ CRPD/C/27/3, para. 6, 8, 29, 37, 58.

¹²⁶ CRPD 탈시설가이드라인 para. 37은 시설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시설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환경일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의사소통 여부를 비롯한 손상의 정도가 시설 거주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입소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전체 거주인
48.9%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확실한 탈시설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에 한해 탈시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거주인들을 시설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 카테고리 I, V

노인의 장기요양과 시설서비스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노인의 입소 자기결정권과 관련, 법령상으로 입소계약은 입소대상인 노인과 시설의 장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¹²⁷. 노인요양시설 내 신체구속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노인의 신체구속을 직접 허용하고 그 요건·기간·절차를 정한 명시적 법률 규정은 없다.

그러나 경기도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입소노인 중 입소계약서를 직접수령하지 않고 보호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전체의 **84.6%**에 이르렀고, 입소노인의 신체구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체구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신체구속과 관련한 시설 내부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35%**에 이르렀다¹²⁸.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입소노인 **801명** 중 **100명**에 대해 신체억제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입소노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받고 있었으며, 그 동의도 사전적·포괄적으로 이뤄졌다¹²⁹. 즉, 노인에 대한 구금의 시작부터 그 처우까지 노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지고, 그 처우의 수준은 신체구속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은 법적 근거와 개별적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카테고리 I에 해당하며,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한 구금이라는 점에서 카테고리 V에도 해당한다.

권고

¹²⁷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제6항, 제15조 제7항.

¹²⁸ 경기도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체계 개선 권고", 2024. 12. 28., 5면, <표2>.

¹²⁹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2022. 8. 3., 5, 11면.

- 노인요양시설 내에서의 신체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체구속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제도를 마련할 것.
- 노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퇴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 노인이 시설입소 대신 거주하던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체계를 보장하는 인권기반의 법적-행정적 제도를 마련할 것.

시설수용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피임과 자유박탈: 동명원 사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대한민국에 장애인의 강제수용과 자의적·강제적 처우를 금지·감시하고,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을 근절하며 사건을 식별·조사하고 완전한 구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으나,¹³⁰ 아래 사례와 같이 이러한 권고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피임 등 의료개입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동의에 따라야 한다.¹³¹ 자의적구금워킹그룹은 정신병원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떠날 수 없게 하는 경우 자유박탈이 될 수 있다고 본다.¹³²

1972년 전남 목포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운영을 시작한 동명원에서는 2010년 지적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이후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 9명에게 IUD(자궁내피임장치)가 삽입한 것으로 보고되며, 이들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자유롭고 유효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³³

¹³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CRPD/C/KOR/CO/2-3 (2022), paras. 37–38.

¹³¹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 장애여성과 여아」, CRPD/C/GC/3 (2016), paras. 32, 44–45.

¹³²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CN.4/2005/6 (2004), paras. 47–58, 'Deliberation No. 7 on issues related to psychiatric detention'.

¹³³ 일부는 퇴소 후에도 삽입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한 피해자는 2017년에서야 유착된 장치를 제거했다.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동행 제공자료, 「시설수용 상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피임과 자유박탈: 동명원 사례」, 「강제피임 시술」 부분

강제피임은 시설 수용 및 비자의적 입원 등 다른 자유 박탈 조치와 함께 성·재생산 통제의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진술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여성 생활공간은 최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매일 18시부터 이튿날 06시까지 외부에서 잠겨 이동이 제한되었다. 또한, 임신한 여성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임신 7개월 차부터 출산 직전까지, 그리고 출산 후 약 4개월간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당한 기록이 확인된다. 2015년 지자체 지도점검 당시 이러한 잠금장치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고

- 동명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제피임, 생활공간 감금 및 비자의적 정신병원 입원의 경위와 상호 연관성, 국가·지자체의 인지 및 관리·감독 책임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
- 피해자에게 비공개 면담, 건강검진·후속 의료지원과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의료·재생산 결정에서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개인적 동의와 자유로운 이동·퇴소를 보장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할 것

인신매매 맥락에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 – 카테고리 I, V

이주어선원, 계절노동자들은 고액의 이탈보증금, 여권·신분증·통장 등 압수, 이동·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자유의 박탈 위험에 놓여 있다. 2026년 7월 21일, 중국 원양어선 승선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선원 약 20명이 한국의 대행업체 및 경호업체에 의해 모텔에 감금되었다. 이들은 여권을 압수당하였고, 객실 문은 외부에서 잠겼으며, 창문에는 철창살이 있었고, 경호 인력이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2명의 선원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¹³⁴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의3에 따라 수협중앙회 등 선박소유자 단체에 외국인 선원의 고용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어선원들은 수협 등에 의해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압수당하고, 승·하선 전후 이동 역시 보안 인력의 통제를 받는다. 해양수산부의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원양외국인선원복지교육원’은 출입구를 포함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창문은 철창살로 막혀 있으며, 현관문이 외부에서 잠기고, 경비원이 이동을 감시하여, 사실상 구금시설로 운영된다.¹³⁵

선원법 제50조의2는 선박소유자의 여권 대리보관을 금지하지만, 직접 의무자를 선박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타 관리주체가 신분증을 보관하는 경우를 규제하지 못한다.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이주어선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약 90%가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였으며, 이중 약 절반은 신분증과 통장도 함께 압수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압수 주체는 (해양수산부가 이주어선원 관리 업무를 위탁한) 관할 지역 수협이었다.¹³⁶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를 인정한 해남 계절노동자 사건에서는 사적 주체가 여권 압수, 이탈보증금, 친인척 연대보증 및 이탈 시민·형사상 책임 고지 등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¹³⁷¹³⁸

¹³⁴ Hankyoreh, [Busan is becoming a stopover for human trafficking by fishing operations](#), 2026. 8. 7.

¹³⁵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사)공익법센터 어필, <바다에 붙잡히다>, 2016

¹³⁶ 선원이주노동자네트워크, [보도자료: 이주어선원 여권 압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1. 10. 7.

¹³⁷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권고, 24진정0013300, 2024. 10. 10. 2026년 3월 고흥 굴 양식장에 배치된 여성 계절노동자 15명이 생활하는 숙소에는 남성 브로커가 매일 밤 찾아와 인원을 확인하고, 숙소 내부에 감시용 CCTV가 설치돼 있었으며, 마트에 혼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당사자 증언도 있다.

¹³⁸ 오마이뉴스, 밤 10시마다 여자 숙소에 오는 남자...고흥 굴가기 작업장서 벌어진 일, 2026. 3. 16.

한국 정부는 언론보도와 정기 근로실태조사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 왔다.¹³⁹ 그러나 고용·채류 관리 과정에서의 공공성 강화 등 예방·조사·처벌·구제 조치를 실효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아 차별적 자유 박탈이 지속되는 구조를 용인하고 있다. 이는 카테고리I 및 카테고리V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권고

- 이주 어선원,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모집·고용·채류 과정에서 고용 관리 업무에 개입된 단체 및 사적 주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
- 자유 박탈 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무처 변경 허가 요건 완화 및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

염전 노동착취에서의 자유박탈과 국가의 보호의무

1.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 법제도

한국이 비준한 ICCPR 제 8조(강제노동 금지) 제9조 (자의적 자유박탈)¹⁴⁰과 직업소개·근로자공급사업과 지도·점검을 규율하는 한국의 직업안정법¹⁴¹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염전에서 장애인을 감금하고 노동착취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자유권위원회와 장애인권리위원회 등은 장애인의 착취·폭력·학대 방지와 구제를 권고했다.¹⁴²¹⁴³

¹³⁹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6. 5. 2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1. 7. 26. 보도자료,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2026. 5. 7.

¹⁴⁰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신체의 자유와 안전), CCPR/C/GC/35 (2014), para. 7.

¹⁴¹「직업안정법」 제19조, 제33조, 제39조, 제41조.

¹⁴²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CCPR/C/KOR/CO/5 (2023), paras. 33–34.

¹⁴³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정기보고서 최종견해, CRPD/C/KOR/CO/2-3 (2022), paras. 35–36.

2. 문제되는 현실

염전 노동력 착취 문제는 염전 내 자의적 구금과 함께 반복되었다. 2026년 전남 영광 염전 사건에서 장애인 등 노동자 3명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배치된 뒤 강제근로·폭행·불법감금과 임금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1억 6,300만 원 이상의 임금 착취를 밝혔고, 검찰은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 노동과 약 3억 원의 임금 미지급 혐의 등을 제시했다.¹⁴⁴

임금체불을 넘어 모집·소개, 이동, 숙식·경제적 통제, 배치와 이탈 제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자유박탈 여부를 판단하며, WGAD도 다양한 형태의 사실상 자유박탈을 폭넓게 다룬다.¹⁴⁵¹⁴⁶

3. 제안 권고

- 염전 등 고위험 업종의 노동착취 사건에서 모집·소개·공급자를 포함한 유입경로와 이동, 신분증·통장·채무·숙식·외부접촉 통제 등 사실상 자유박탈 지표를 조사하고 수사·피해자 보호로 연계할 것.
- 장애인 등 취약구직자의 폐쇄적 사업장 배치 시 본인 의사·근로조건·근무지·숙소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사후 모니터링하여 자유로운 이탈과 신고·구제 접근을 보장할 것.

과거 집단수용시설 자의적구금

¹⁴⁴해양수산부, 염전근로자 노동·인권침해 관련 보도자료(2026.8.5.); SBS, 염전 노동착취 사건 관련 보도(2026.6.25.; 2026.7.8.).

¹⁴⁵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 CCPR/C/GC/35 (2014), paras. 3, 5–7.

¹⁴⁶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 Deliberations on deprivation of liberty, 특히 사실상 자유박탈에 관한 논의.

대한민국에서는 권위주의정부 시기 국가기관과 민간에 의한 시설수용이 다수 발생했다. 일반 시민, 인권옹호자,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구금이 이루어졌다.¹⁴⁷ 이들 사례들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금, 집회 및 표현의 자유 행사 등에 대한 구금으로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관련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수차례 만들어졌다.¹⁴⁸ 그렇지만 조사기구 등이 권고한 공식사과, 피해회복 조치 강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¹⁴⁹ 특히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받더라도 별도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해서 적시에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 피해를 받고 있다. 시효 등에 의해 청구가 기각되기도 한다.¹⁵⁰

한편,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기능을 강화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6년 2월 말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¹⁵¹ 이미 조사가 이뤄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외에도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아동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벌어진 자의적 구금 및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어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¹⁵² 그렇지만 한시적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불충분할 수 있다.¹⁵³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를 권고하였고,¹⁵⁴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특히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폐쇄형 시설의

¹⁴⁷ A/HRC/54/24/Add.1, paras. 6, 9(e).

¹⁴⁸ A/HRC/54/24/Add.1, paras. 11, 18, 19.

¹⁴⁹ A/HRC/54/24/Add.1, paras. 50, 55, 58.

¹⁵⁰ A/HRC/54/24/Add.1, paras. 38, 39, 47.

¹⁵¹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접수 개시", 2026. 2. 25.,

<https://www.jinsil.go.kr/fnt/bbm/bbs/selectBoardArticleView.do?nttlId=22949>.

¹⁵²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자료,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1개월, 진실규명 신청 크게 늘어", 2026. 3. 26.,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tlId=326926

¹⁵³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접수 개시".

¹⁵⁴ A/HRC/54/24/Add.1, para. 86(n).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 만족, 재활서비스 등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¹⁵⁵

이에 국회에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효적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¹⁵⁶ 정부와 국회는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권고

- 과거의 국가폭력 및 시설수용에 따른 자의적 구금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보상 특별법 등의 제정 등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게 공적 사과, 재활 및 심리 서비스, 보상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제 및 배상을 보장할 것
- 구금, 강제노역, 성폭행 등을 자행한 수용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수용자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성매매여성의 범죄화 및 차별적 처벌 – 카테고리 I, V

한국의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구매, 판매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금지주의 원칙을 가진다. 다만

¹⁵⁵ CAT/C/KOR/CO/6, paras. 38–39(a).

¹⁵⁶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719호, 2026. 3. 25.).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매매피해자’ 규정을 두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법에 따라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행위자’(처벌대상)와 ‘성매매피해자’(보호대상)의 이중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¹⁵⁷ 성매매여성의 처벌은 처벌 여부의 불확실성,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지하므로 **Category I**에 해당하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광고죄 적용은 **Category V** 성별에 따른 차별적 법집행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와 판례는 ‘성매매피해자’의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강요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어, 대다수의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에서 성매매여성 지원 사례 85건을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로 신고된 45건을 ‘성매매행위자’로 적용하여 수사하였다 (범주1). 그리고 27건의 경우에는 성매매여성이 피해자라 주장하였지만 처벌의 우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범주2), 단 13건만이 수사기관에 의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었다 (범주3). 하지만 실제로 범주1과 범주3의 피해 상황, 내용, 피해자의 조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수사는 수사기관의 성인지감수성, 수사의지에 좌우되었다.¹⁵⁸

이에 대해 2013헌가2(성매매여성 처벌에 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은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¹⁵⁹ 성매매여성 처벌의 구성요건은

¹⁵⁷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제1항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조 제1항 제4호 : “성매매피해자”란 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제6조 제1항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3항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¹⁵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토론회: 이제는 성평등모델” (2023. 11. 6), 토론회 자료집.

<https://jkyd2004.org/library/?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68070703&t=board>

¹⁵⁹ (판례번호) 일부위헌의견,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9435&mode=1>

엄밀해야 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법이 보호해야 할 성매매피해자를 국가가 형사처벌할 위험성이 상존한다.¹⁶⁰

성매매여성은 강간과 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사기, 착취,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범죄 피해가 있을 때에도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성매매여성은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¹⁶¹

한편,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¹⁶² 수사기관은 성매매 수사의 편리함을 위해 성매매 광고죄를 성매매여성에게 적용하여 단속, 처벌하고 있다. 2024년 성매매광고죄 ‘검거’의 80%가 여성이며¹⁶³, 이는 성구매자는 단속, 처벌하지 않은 채로 성매매여성만 처벌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차별적이다.

권고

- 성매매처벌법 상 처벌 행위를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로 바꾸어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할 것

¹⁶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성매매여성 처벌의 현실: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2025. 12.2)토론회 자료집.

<https://jkyd2004.org/library/?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68881134&t=board>

¹⁶¹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2453.html>

¹⁶²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제정)의 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07196,20040322\)](https://www.law.go.kr/법령/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07196,20040322))

¹⁶³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6856>

코로나19 당시 격리, 수용 & 사실상 구금 – 카테고리 I, II & V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관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환자와의 접촉, 특정 지역의 방문·경유, 위험요인에의 노출 등 폭넓은 요건을 기준으로 격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심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광범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의 규정은 미비하다.¹⁶⁴ 이는 자의적구금워킹그룹의 자의적 구금 5가지 카테고리 중 I, II, 또는 V에 해당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한민국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한 격리의 대상인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법률적으로 특정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를 활용하여 밀접접촉자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강제격리 행정조치를 남발하였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법률에 명시되는 않은 방식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내의 다수 개인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이동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관련 조치의 금지, 법률 개정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¹⁶⁵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시기 교정시설을 외부로부터 전면 봉쇄하는 것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일부 수용자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기도 하였다.¹⁶⁶

¹⁶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3530&lang=ENG

¹⁶⁵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2023.04.12.

¹⁶⁶ Another inmate dies at detention center (The Korea Times)
<https://shorturl.at/xG9ch>

권고(제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불특정 다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된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도한 격리 조치를 중단하며,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것
- 감염병 상황에서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감염병에 특히 취약하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사망한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

성소수자의 구금 – 카테고리 I, V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¹⁶⁷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¹⁶⁸,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제3부는 영내 또는 근무 중의 행위는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¹⁶⁹ 환송 후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8일 항소를 기각하였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유지되었다.¹⁷⁰ 2017년 8월 성적 지향 및

¹⁶⁷ Article 92-6 (Disgraceful Conduct) A person who commits anal sex or other disgraceful conduct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provision of Article 1(1) through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u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¹⁶⁸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The Guardian, “South Korea’s highest court overturns military convictions of two gay soldiers”, 22 April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pr/22/south-koreas-highest-court-overturns-military-convictions-of-two-gay-soldiers>

¹⁶⁹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¹⁷⁰ 뉴스토마토, "'군기위반 징계'로 충분한데...법정 선 '동성군인 처벌법', 문제는?", 2026. 8. 28.,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부의장,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색출과 체포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청원을 보내, 적법절차의 결여를 지적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¹⁷¹ 그럼에도 조항은 유지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과 자유의 박탈이 자유권규약 제17조 및 제26조에 반한다는 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조항에 근거한 구금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며(카테고리 I),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기인한다(카테고리 V).¹⁷²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거수용은 야간과 휴업일에만 독거하는 처우상 독거수용과, 항상 독거수용하면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계호상 독거수용으로 나눈다.¹⁷³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해서는 처우상 독거수용이 원칙이 되어야 하나, 일부 교정시설은 후자를 원칙으로 운용한다. 최근 한 교정시설은 소송 과정에서 성소수자 수용자가 성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호상 독거수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상시적 접촉 차단은 넬슨 만델라 규칙상 독거구금에 해당하고 15일을 초과하면 금지되는 장기 독거구금이 되며,¹⁷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격리는 구금 자체를 자의적인 것으로 만든다(카테고리 V).¹⁷⁵

전환치료를 목적으로 한 감금은 가족이나 종교시설 등 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 여부를 당사자가 자의로 그곳을 떠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의 문제로 보며,¹⁷⁶ 성소수자를 전환치료를 강제 시행을 위해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병원, 정신의료기관, 종교시설 및 가정 내를 포함한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1825>

¹⁷¹ UA KOR 2/2017 (2017. 8.)

¹⁷² WGAD, Deliberation No. 12, A/HRC/48/55, annex, paras. 40–41.

¹⁷³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¹⁷⁴ Nelson Mandela Rules, rules 43(1), 44.

¹⁷⁵ Deliberation No. 12, A/HRC/48/55, annex, paras. 45–47

¹⁷⁶ WGAD, Fact Sheet No. 26/Rev. 1 (2024), p. 10

사적, 공적 공간 모두에 대하여 확인하였다.¹⁷⁷ 한국에서 전환치료는 주로 기도와 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6년 3월에는 한 트랜스젠더 청년이 목사에게 강제로 상담을 받던 중 폭행을 당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⁷⁸ 그럼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이러한 감금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며(카테고리 I),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에 기인한다(카테고리 V).

권고(제안)

-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야 한다. 폐지 이전에도 이 조항에 근거한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여야 한다.
-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계호상 독거수용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독거수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처우상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의 모든 개입을 의료, 종교, 교육, 상담 등 공적, 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홈리스에 대한 자의적 구금

강제되는 노숙인복지시설수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국가가 주거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노숙인복지시설 등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홈리스의 복지를 위해 도입되었고, 임대주택공급이나 임시주거비 지원등도

¹⁷⁷ WGAD, Deliberation No. 12, A/HRC/48/55, annex, para. 44.

¹⁷⁸ 뉴스앤조이, "소속감 악용하는 성소수자 전환 치료...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에게 가하는 폭력", 2021. 8. 20.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수용이 우선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홀리스에게 시설수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카테고리Ⅰ,Ⅲ,Ⅴ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일례로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시설 입소 외 주거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홀리스가 노숙인생활시설로만 입소되고 있다.¹⁷⁹ 서울특별시의 경우,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거처 제공이 아닌 민간 소유의 영가 거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주거의 질이 열악하고, 계약의 당사자를 노숙인시설장으로 하여 이용자의 임차권을 배제하고 있다.¹⁸⁰

지역사회 주거 대안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노숙인생활시설로의 입소를 늘리며, 동시에 퇴소 및 지역사회 정착 또한 어렵게 만든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홀리스(거리노숙, 시설입소) 중 거리 홀리스는 16.8%인 반면, 시설 입소자는 83.2%에 달한다.¹⁸¹ 더 큰 문제는 시설 생활이 만성화되고 장기화된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20년 이상 입소자 비율은 전체의 30.5%, 10년 이상 입소자 비율은 55.4%로 매우 높다. 노숙인생활시설의 하나인 노숙인요양시설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퇴소’ 비율이 전체 퇴소자의 20%를 상회한다.¹⁸² 즉, 홀리스에게 시설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야’ 나오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다.

권고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주거비 지원”을 실시할 것. “임시주거비 지원”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임차료와 거처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처 지원 시 일정 수준의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충족하도록 할 것. 또한, 이용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임차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

¹⁷⁹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24년도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서미화의원실 수신자료.

¹⁸⁰ 서울특별시, 「2025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¹⁸¹ 보건복지부,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¹⁸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거리 및 시설에서 생활하는 홀리스가 적정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

홀리스에 대한 강제입원 - 카테고리 I, III, V

경찰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다.¹⁸³

2015년, 환자 유치를 위해 대도시 공공역사 인근에 머무는 홀리스에게 접근하여 입원을 유인하고 퇴원 등 관리를 부당하게 해 온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 끝에 2016년 다음의 권고를 낸 바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유인 입원 등 문제 행위를 중단할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리스 유인 입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¹⁸⁴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리스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적절하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사회단체가 확인한 사례 중에도, 강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이 자의적으로 지침을 적용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홀리스가 있었으며, 해당 홀리스가 반복적으로 퇴원 의사를 밝혔으나 의료기관은 이를 묵살하였고,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¹⁸³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¹⁸⁴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입원유인관행 등 개선권고」.

또한 이를 방지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해당 홀리스 당사자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다.¹⁸⁵

권고

- 홀리스를 비롯한 중독 및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여 강제 입원의 남용을 방지 할 것
- 강제 입원이 홀리스를 비롯한 빈민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원 및 격리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거주를 바탕으로 한 질환 관리 및 위해 감소 모델 기반 지원을 확대할 것

홀리스임을 이유로 한 구금

형사소송법은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을 제한하지만,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을 허용하고, 경미범죄의 현행범에 대해서도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한다¹⁸⁶. 즉 경미범죄에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 그 자체가 체포·구금을 정당화하는 요건으로 작동한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를 경미범죄로 정한다¹⁸⁷.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 홀리스는 구걸행위만으로 체포되고 미결구금 될 수 있다. 결국 다양한 이유로 홀리스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현행법 아래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받기 어려우며,¹⁸⁸

해당 사례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식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홀리스가 배달 음식을 훔쳤는데 ‘주거 부정’으로 구속된 사례가 존재한다.¹⁸⁹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사람에 대하여

¹⁸⁵ 한겨레21, "홀리스 대상 위법 행정입원 실태조사 촉구 "법은 언제나 느리고 부족"", 2025. 9. 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944.html.

¹⁸⁶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

¹⁸⁷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8호.

¹⁸⁸ 「형사소송법」 제198조.

¹⁸⁹ 한국도시연구소·경향신문, 「떠도는 사람들의 빈곤과 범죄 보고서」, 2020. 4.

최대2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⁰. 즉 생활고에 의해 소액절도를 한 홈리스의 경우,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수밖에 없는 홈리스를 구금하는 제도로써 카테고리V의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권고

- 홈리스 상태에 놓여 불가항력적으로 ‘주거 부정’이 되는 사람에게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구걸행위’와 같이 홈리스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구금하는 법률¹⁹¹을 폐지,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¹⁹⁰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4 제5항 제1호.

¹⁹¹ 「경범죄 처벌법」 제3조.